

재무감사

# 감사 보고서

-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및 울산대학교 재무감사 -

2025. 9.

교육부

#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	1
II. 감사대상기관 현황 .....	2
III. 감사결과 .....	4
1. 감사결과 총괄 .....	4
2. 처분 요구 사항 .....	6
(1) 육아 휴직 수당 관련 정관 미개정 등 부적정(기관주의·개선·통보(시정완료)) ..	6
(2) 허위 검수조서 작성 및 구매대금 부당 지급(징계·문책(징계)·경고·회수·통보) .....	11
(3) 일반경쟁입찰 대상 수의계약 체결 부당(징계·경고·주의) .....	20
(4) 의학연구비 지급 부적정(통보) .....	26
(5) 학생생활관 소속 직원 대리운전 비용 지원 부적정(주의·회수·통보(인사자료)) .....	29
(6) 교직원 부양가족 건강검진비 교비회계 지원 부적정(통보) .....	34
(7) 연구재료비 집행 부당(징계·문책(경징계)·경고·주의·통보(인사자료)) .....	39
(8) 연구과제 회의비 집행 부적정(기관경고·회수) .....	46
(9) 공동기기센터 장비 사용료 미징수 등 관리 부적정(통보) .....	51
(10) 지식재산권 미신고 부적정(통보) .....	58
(11) 시설공사 법정경비 미정산 부적정(경고·회수) .....	62
(12) 시설공사 준공처리 부적정(경고·회수) .....	66
IV. 현지조치 사항 .....	69

# I. 감사실시 개요

---

## 1. 감사배경 및 목적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및 울산대학교는 그간의 감사 수감 이력, 교육부 국고 지원 규모 등을 고려<sup>1)</sup>할 때 법인과 학교의 재산 및 회계관리·운영에 대한 적정성 등 점검이 필요하였다. 이에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및 울산대학교에 대한 재무감사를 2023년 행정감사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감사를 하게 되었다.

##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의 이사회 운영, 재산 운용, 재무·회계 관리와 함께 울산대학교의 예산·회계, 연구비, 계약, 기자재 관리, 국가 재정사업 집행·관리 및 민원 제기 사항에 대한 확인 등 회계 분야 전반에 대하여 2020. 3월 ~ 2023. 6월 감사일까지 수행한 업무를 점검하였다.

## 3. 감사실시 과정

실지 감사에 앞서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및 울산대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부서의 점검 결과, 주요 언론보도·민원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본 감사는 2023. 6. 7.부터 6. 16.까지 8일간 실시하였고, 추가 감사를 2023. 7. 10.부터 7. 14.까지 5일간 총 감사 인력 11명(시민감사관, 회계사 등 포함)을 투입하여 실지 감사를 하였다.

## 4. 감사결과 처리

감사 결과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2023. 6. 16.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사무국장 등 주요 보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 마감 회의를 하고, 2023. 10. 27. 서면으로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 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교육부에서는 감사 마감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 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4. 5. 23.(1차), 2024. 6. 5.(2차), 2025. 6. 4.(3차)감사처분심의회 의결로 최종 감사 결과를 확정하였다.

---

1) 종합감사 수감(1994.) 후 30년 경과, 재무감사 미수감, 국고지원('21.) 규모 4년제 73교 중 17위

## II. 감사대상기관 현황2)

### 1. 주요 연혁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은 1969. 4월 설립을 인가받은 이후(초대 이사장 A), 2021. 12월 제7대 B 이사장이 취임 하였다. 또한, 대학은 1969. 12월 설립을 인가받은 이후(초대 총장 C) 2015. 3월 제10대 D 총장이 취임하였다.

### 2. 법인 현황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은 이번 감사 대상인 울산대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고, 이사 7명, 감사 2명 등 법인 임원 9명을 두고 있다.

[표 1]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임원 현황

직 위	성 명	성 별	임 기	전·현직(주요경력)
이사장	B	-	-	-
이 사	-	-	-	-
이 사	-	-	-	-
이 사	-	-	-	-
이 사	D	-	-	-
이 사	-	-	-	-
이 사	-	-	-	-
감 사	-	-	-	-
감 사	-	-	-	-

### 3. 재정 현황3)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의 예산(법인회계)은 2021회계연도 26,739,827천원에서 2022회계연도 10,913,000천원으로 15,826,827천원(59.2%) 감소하였고, 울산대학교의 예산(교비회계)은 2021회계연도 220,567,149천원에서 2022회계연도 226,410,871천원으로 5,843,722천원 증가(2.6%)하였다.

2)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기관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상 기관이 제출한 자료 및 대학알리미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3) 재정현황의 '예산'항목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 기준임(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또한,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예산은 2021회계연도 76,905,339천원에서 2022회계연도 79,170,840천원으로 2,265,501천원 증가(2.9%)하였다.

**[표 2] 학교법인 등 최근 3년간 예·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예 산	결 산	예 산	결 산	예 산	결 산
법인회계	31,461,203	24,717,187	26,739,827	30,403,277	10,913,000	11,704,976
교비회계	228,045,115	257,088,431	220,567,149	236,513,734	226,410,871	280,633.664
산단회계	77,841,299	60,371,253	76,905,339	80,397,743	79,170,840	82,014,375

#### 4. 전임교원 확보 현황

울산대학교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학생 정원 대비 12.53명이고, 재학생 대비 12.3명이며, 전임교원은 학생 정원 대비 157.74%, 재학생 대비 161.57%를 확보하고 있다.

**[표 3]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및 전임교원 확보 현황**

(2022. 10. 기준)

구 분	학생수(명)			전임교원현황(명)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명)	전임교원 확보율(%)
	학 부	대학원	계			
학생정원	11,014	3,154	14,168	1,131	12.53	157.74
재 학생	11,343	2,572	13,915		12.3	161.57

#### 5. 시설확보 현황

울산대학교는 입학정원 기준(391,616m<sup>2</sup>) 대비 135.6%의 교지를 확보(530,890m<sup>2</sup>)하고 있고, 교사는 입학정원 기준(207,002m<sup>2</sup>) 대비 127.4%를 확보(263,685m<sup>2</sup>)하고 있다.

**[표 4] 교육시설(교지·교사) 확보 현황**

(2022. 10. 입학정원 기준)

구 분	기 준	보 유	확보율(%)
교지(m <sup>2</sup> )	391,616	530,890	135.6
교사(m <sup>2</sup> )	207,002	263,685	127.4

### Ⅲ. 감사결과

####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감사결과 총괄**

(단위 : 건, 명, 천원)

기관명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계		
학교법인 울산공업 학원	-	-	-	-	-	△ 기관주의 1건 △ 개선 1건 【합계 2건】	-
울산 대학교	-	13명 (2건)	36명 (4건)	10명 (3건)	59명 (9건)	△ 기관경고 1건 △ 기관주의 1건 △ 통보 5건 △ 통보(문책) 1건 △ 통보(시정완료) 1건 【합계 9건】	△ 회수 5건 79,400천원 【합계 5건】
합계	-	13명 (2건)	36명 (4건)	10명 (3건)	59명 (9건)	△ 기관경고 1건 △ 기관주의 2건 △ 통보 5건 △ 통보(문책) 1건 △ 통보(시정완료) 1건 △ 개선 1건 【합계 11건】	△ 회수 5건 79,400천원 【합계 5건】
교육부 등 <별도조치>	-	-	-	-	-	△ 통보 3건 △ 수사의뢰 1건 【합계 4건】	-

※ ( )안은 신분상 조치 대상자에 대한 지적 건수 합계임(징계시효 도과로 경고 1명 포함). 단, 퇴직자에 대한 통보[인사자료, 경징계 1, 통보(문책 3), 경고 10, 주의 2]는 총괄표의 신분상 조치에서 제외

※ 신분상 조치 경합 시에는 상위 조치로 함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기자재, 연구재료비 등 집행 부당
  - 기자재 검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구매 대금(302,896천원) 집행(징계, 문책, 회수 등)
  - 연구과제 관련 물품 구매 시, 이미 구매한 물품 증빙서류를 재사용하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증빙서류에 기초하여 연구비(1,364,320천원) 허위 집행(징계, 수사의뢰 등)
- 수의계약 체결 부당
  - 일반경쟁 대상 계약 57건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3,521,694천원)하고 집행(징계, 경고 등)

이에 대하여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이사장 및 울산대학교 총장 등에게 허위로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구매 대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관련자들과 실제 연구 물품 구매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연구비를 집행한 관련자들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는 등 총 12건의 감사 결과를 처분 요구하였다.

## 2. 처분 요구 사항 : 12건[붙임 참조]

**교 육 부****기관주의·개선·통보(시정완료)**

제 목 육아 휴직 수당 관련 정관 미개정 등 부적정

소 관 기 관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

조 치 기 관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은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교직원들에 대한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고 있고, 울산대학교는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정관」에 따라 교직원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0학년도에 [표 1]과 같이 교원 2명에게 육아휴직을 명하였다.

**【표 1】 2020학년도 육아휴직자 현황**

연번	소 속	직	성 명	휴직 기간 (개월)
1	간호학과	조교수	E	2020.08.30. ~ 2021.06.30. (10개월)
2	생활과학부	부교수	F	2020.09.01. ~ 2020.12.31. (4개월)

※ 자료 : 울산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립학교법」(시행 2020. 9. 25.)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해당 사유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직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에 따르면 법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육아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 제6호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등 국립·공립 학교의 교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사유(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 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등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 11 조 의 3 ( 육 아 휴 직 수 당 )**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 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그리고, 「울산대학교 교원 보수 규정(개정 2020.11.1., 시행 2020.12.1.)」 제15조의2 및 부칙에 따르면 육아휴직 교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을 준용하여 육아휴직수당(자녀양육수당)을 지급하고, 해당 규정은 2020. 9. 25.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은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의 휴직기간,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을 따르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및 울산대학교는 육아휴직 교원의 신분보장 및 처우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1) 정관(육아휴직 교원 신분보장 및 처우 관련) 미개정 관련

그런데,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은 2020. 9. 25. 육아휴직 교원의 신분보장 및 처우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사립학교법」이 시행(개정 2020. 3. 24.)되었는데도, ‘육아휴직 교원에 대하여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정관」 제47조 제3항을 2023. 6. 감사일 현재까지도 개정하지 아니하였다.

#### <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정관」 >

**제44조 (휴직)** 교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제47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 제44조 제5호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에 대해서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 결과,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등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그 동안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규율하고 있던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기간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사립학교법」의 개정 취지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사립학교법」 개정 전·후 비교>**

「사립학교법」(~2020.9.24.)	「사립학교법」(2020.9.25.~)
<p>제59조(휴직의 사유) ① - 생략 -</p> <p>②제1항의 휴직의 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p> <p>③임용권자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p>	<p>제59조(휴직의 사유) ① - 생략 -</p> <p>②제1항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같은 항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p> <p>③임용권자는 제1항 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b>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p> <p>④<b>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b> 휴직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는 <b>정관으로 정한다.</b></p>

**2) 육아휴직수당 과소 지급 관련**

그리고, 울산대학교는 2020. 8. 부터 2020. 9.까지 [표 2]와 같이 E 등 2명에게 육아휴직을 명하고도, 2020. 11. 1. 「교원 보수 규정」 개정 전 자녀양육수당으로 정한 500,000원만 지급하였다.

**【표 2】 육아휴직수당 과소 지급 현황**

(단위 : 원)

연번	소 속	직	성 명	휴직기간	2020. 9.			2020. 10.			계 (a+b)
					기지금액	정당지금액	차액(a)	기지금액	정당지금액	차액(b)	
1	◀학과	조교수	E	-	-	-	-	-	-	-	-
2	◆학부	부교수	F	-	-	-	-	-	-	-	-
계				2명	-	-	-	-	-	-	2,400,000

※ 자료 : 울산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2020.11.부터는 정상 지급)

그 결과, E 등 2명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육아휴직수당 합계 2,400,000원(1,200,000원/인)을 덜 지급받게 되었다.

#### 4. 관계기관 의견

##### 1) 정관(육아휴직 교원 신분보장 및 처우 관련) 미개정 관련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은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에 동의하면서 육아휴직 수당 조항 포함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기 이사회에서 정관을 개정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2) 육아휴직수당 과소 지급 관련

울산대학교는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에 동의하면서 「울산대학교 교원 보수 규정」의 육아휴직수당 부분이 2020.12.1. 시행되면서(2020.11.1.개정), 2020.9.25.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담당자 퇴직 및 후임자 임용 과정에서 인수인계 되지 못하여 육아휴직수당이 소급 지급되지 못하였으며, 미지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2023.10.20. 지급을 완료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5. 조치할 사항

#####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이사장은

① 앞으로 「정관」 등 자체 규정에 「사립학교법」 등 상위법령과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② 또한, 「사립학교법」과 다른 내용으로 규정된 「정관」의 내용을 조속히 개정 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 울산대학교 총장은

① 앞으로 「사립학교법」 및 「보수 규정」 등에 위반되게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② 또한,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울산대학교는 2023. 10. 20. 조교수 E 등 2명에게 덜 지급된 육아휴직 수당 합계 2,400,000원을 전액 지급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보(시정완료))

# 교 육 부

## 징계·문책(징계)·경고·회수·통보

제 목 허위 검수조서 작성 및 구매대금 부당 지급

소 관 기 관 울산대학교,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조 치 기 관 울산대학교

내 용

### 1. 업무개요

울산대학교는 ◇학부 조교수 G(○사업단 과제책임자)이 구매 요구한 기자재 6건 (○사업단 5건 / 개인 연구과제 1건)에 대하여 계약부서(구매관재팀 5건, 산학구매팀 1건)에서 「울산대학교 구매 계약 규정」 제21조 제1호에 따라 ▷▷(주)와 총 6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기자재의 납품이 모두 완료되었다는 사유로 지출부서인 회계팀 (5건, 239,756천원)과 산학회계팀(1건, 63,140천원)에서 2023. 4. 18.부터 4. 20.까지 총 6회에 걸쳐 기자재 대금 합계 302,896천원을 지급하였다.

\* 계약체결 현황(6건/302,896천원) : 2022.12.13.(1건/63,140천원), 2022.12.14.(1건/66,330천원), 2023.1.3. (1건/137,500천원), 2023.1.4.(2건/6,776천원), 2023.1.12.(1건/29,150천원)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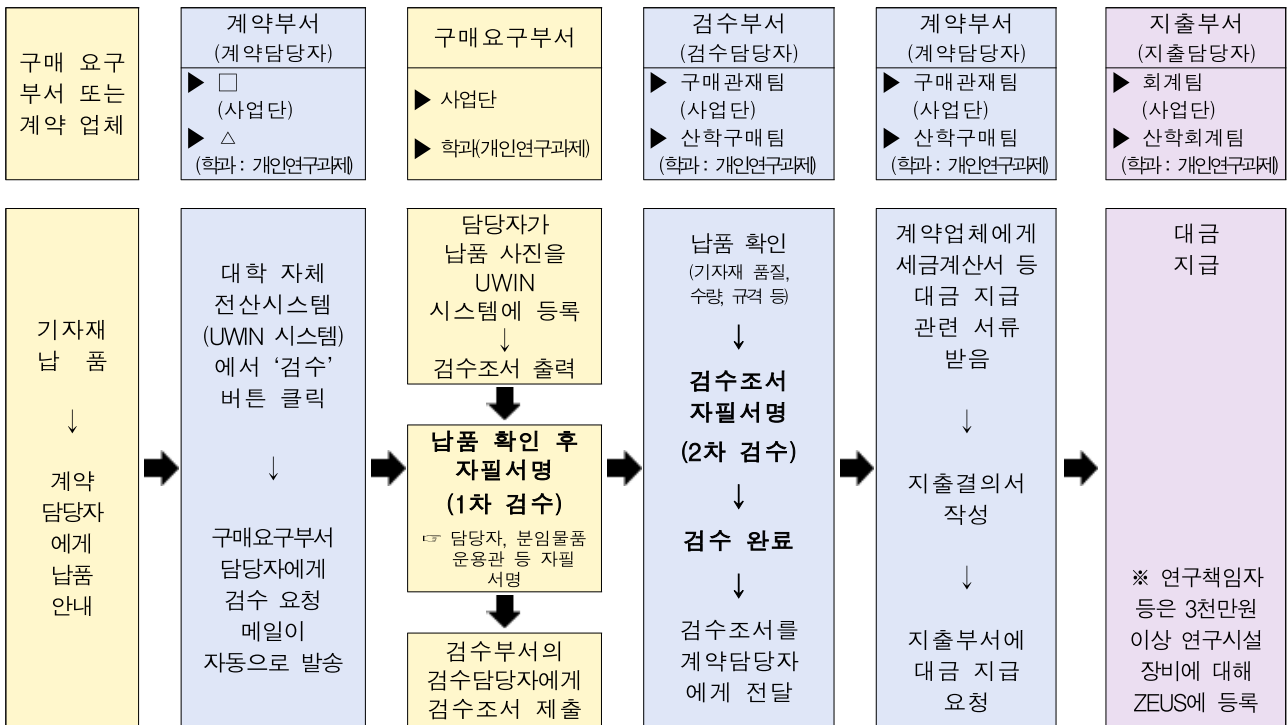
또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0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는 공사·제조

또는 물품구입 등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 그 대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계약 금액 3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여야 하고,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검사 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울산대학교 구매 계약 규정」 제41조에 따르면 구매한 물품·용역에 대한 검수는 「울산대학교 검수 규정」에 따라 검수를 받아야 하며, 「울산대학교 검수 규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기계기구·비품·연구장비 등의 구입에 대한 검수는 품목단가당 1백만원 이상은 구매관재팀(산학구매팀)에서 실시하고, 품목 단가당 1백만원 미만은 요구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수를 할 수 있으며, 검수자는 금액에 관계 없이 검수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울산대학교 구매 계약 규정」 제42조 제1항 및 제45조에 따르면 물품 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 상대방의 요청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면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표 1】 물품 검수 및 대금 지급 처리 절차**



※ 울산대학교는 계약부서와 검수부서가 동일하며, 같은 부서에서 계약담당자와 검수담당자가 별도로 있음

또한, 울산대학교의 ㄷ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ㄹ ○사업단은 별도의 'ㄷ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2022.3.)'을 따라야 하며, 3차 연도 사업기간은 2022. 5. 1. ~ 2023. 3. 31.로 지출행위는 연차별 사업기간 종료 후 20일(2023.4.20.)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고,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기간 내에 예산을 지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한국연구재단의 승인을 받아 해당연도 전체 사업비와 이자의 15% 이내에서 예산을 이월하여 다음 사업기간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 등은 계약 관련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회계 연도 내에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을 승인 받아 이월하여 다음 회계 연도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계약한 물품이 납품이 되지 않았는데도 납품이 된 것처럼 물품 사진을 UWIN 시스템(대학 자체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구매대금을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기자재 구매요구부서인 ○사업단(5건)과 ◇학부(1건/개인 연구과제)는 ▷▷(주)와 계약 체결한 기자재(6건)에 대하여 납품 기일인 2023. 3. 14.(1건), 2023. 3. 31.(5건)에

전혀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사업기간(회계연도) 내에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계약업체 ▷▷(주)에서 받은 기자재 사진을 울산대학교 UWIN 시스템(대학 자체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검수 조서를 출력하였다.

그리고, ○사업단의 물품운용관(단장 H), 분임물품운용관(팀장 I), 입회자(사무원 J, K)와 ◇학부의 분임물품운용관(학부장 L), 입회자(조교수 G)은 [표 2] “허위 검수조서에 따른 대금 지급 명세”와 같이 2023. 4. 14.부터 같은 해 4. 18.까지 기자재가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완료된 것처럼 총 6건의 허위로 작성한 검수조서(1차 검수)를 구매관재팀(5건)과 산학구매팀(1건)에 제출하였으며, 구매관재팀(산학구매팀)의 검수자 M(2차 검수)은 실제 납품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구매요구부서에서 제출한 검수조서의 자필서명과 UWIN 시스템에 등록된 기자재 사진을 근거로 2023. 4. 17.부터 같은 해 4. 18.까지 검수를 완료하고 계약부서(구매관재팀, 산학구매팀)에 검수조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계약부서에서는 허위로 작성된 검수조서를 근거로 계약업체 ▷▷(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대금 지급 관련 서류를 받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부서(회계팀, 산학회계팀)에 지출 요청하였으며, 지출부서인 회계팀(5건, 239,756천원)과 산학회계팀(1건, 63,140천원)은 지급 의무가 없는 기자재 대금 합계 302,896천원을 2023. 4. 18.부터 같은 해 4. 20.까지 총 6회에 걸쳐 지급하였다.

또한, 계약업체가 기자재 납품기한인 2023.3.14.(1건), 2023.3.31.(5건)으로부터 83일(5건), 100일(1건)이 지난 2023.6.22.에 계약을 이행하였음에도 합계 19,700,960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표 2】 허위 검수조사에 따른 대금 지급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연번	계약명	계약현황			검수조서(납품 전)				대금지급일	실제납품일(지체일수)
			금액	계약일	납기일	작성일	작성자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사업단 (ㄷ사업)	1	카메라 렌즈 등 6종 (16개)	66,330	2022.12.14.	2023.3.14.	2023.4.14.	사업단장	H	물품 운영관	2023.4.18.	(100일)
							사업팀장	I	분임물품 운영관		
							사업단 사무원	J	입회자		
	2	고속 카메라 (2개)	137,500	2023.1.3.	2023.3.31.	2023.4.18.	구매관재팀 차장	M	검수자	2023.4.19.	(83일)
							사업단장	H	물품 운영관		
							사업팀장	I	분임물품 운영관		
	3	카메라 렌즈 (4개)	5,060	2023.1.4.	2023.3.31.	2023.4.17.	사업단 사무원	K	입회자	2023.4.18.	(83일)
							사업팀장	I	분임물품 운영관		
							구매관재팀 차장	M	검수자		
	4	어댑터 (4개)	1,716	2023.1.4.	2023.3.31.	2023.4.17.	사업팀장	I	분임물품 운영관	2023.4.18.	(83일)
사업단 사무원							K	입회자			
5	LED광원 (1개)	29,150	2023.1.12.	2023.3.31.	2023.4.17.	사업단장	H	물품 운영관	2023.4.19.	(83일)	
						사업팀장	I	분임물품 운영관			
						사업단 사무원	K	입회자			
소계	10종 (27개)	239,756									
산학협력단 (개인연구 과제)	6	고속 카메라 (1개)	63,140	2022.12.13.	2023.3.31.	2023.4.18.	◇학부장	L	분임물품 운영관	2023.4.20.	(83일)
							◇학부 조교수	G	입회자		
						2023.4.18.	산학구매팀 차장	M	검수자		
합계	6건	11종 (28개)	302,896								

**4.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가. 관계기관 등 의견**

울산대학교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에는 기자재(물품 포함) 검수 절차는 현장 검수를 원칙으로 하되 서울의 의과대학 등 납품 장소가 원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영상 검수, 해외 물품인 경우에는 세관통관 서류 제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검수 업무 강화를 위해 인원 보강 및 업무분장을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의거하여 납품 지연된 기자재에 대하여 지체상금률에 따라 지체일수를 산입하여 계약상대자 ▷▷(주)에게 현금 납부를 요청할 예정이며, 지체상금을 회수하면 본교 회계규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더 세심한 행정 업무 자세를 견지하고 구매 및 검수 관련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선처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업단(5건)은 동 사안이 발생한 원인이 「울산대학교 물품관리규정」에 근거해 실제 해당 기자재를 운용하는 연구과제 책임자가 소속되어 있는 물품운용관(단과대학장) 및 분임물품운용관(학부장)이 검수하도록 본교 전산시스템(UWIN)에 반영했어야 하나, 현재의 전산시스템(UWIN)은 해당 예산이 배정된 사업단에서 검수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단은 연구과제 책임자가 보내준 검수 사진을 받고 전산시스템(UWIN)에 해당 사진을 등록한 후에 물품운용관(사업단장) 및 분임물품운용관(사업팀장)이 검수를 하게 된 행정적인 검증 구조의 취약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하였으며,

G(조교수)는 감사기간 동안 문답 시에 ○사업단의 과제책임자로서 구매요구한 기자재(5건)에 대하여 계약업체 ▷▷(주)으로부터 납품이 계약기간 내에 되지 않고 2023. 5월말에 된다는 얘기를 듣고 ○사업단에 전달하였으며, ○사업단에서 계약기간 내에 기자재 납품이 되지 않았지만, 선검수를 진행하자고 하였음은 물론 계약업체 (▷▷) 대표와 본인(G)이 공동으로 서명한 납품지연사유서(납품완료일 : 2023. 5. 31.) 작성을 요청하여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G(조교수)은 개인연구과제(산학협력단)로 구매한 기자재(1건)에 대하여 계약업체 (▷▷)가 기자재를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검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였다.

## 나. 검토결과

○사업단은 연구과제 책임자인 G(조교수)가 제출한 검수 사진을 받고 전산시스템(UWIN)에 해당 사진을 등록한 후에 검수조서(5건)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단은 G(조교수)로부터 기자재가 계약기간 내에 납품이 되지 않고 2023. 5월말에 된다는 말을 듣고, ㄷ사업의 지출 마감일인 2023. 4. 20.까지 기자재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자재가 납품이 되지 않았음에도 G(조교수)에게 기자재 사진 제출을 요청하여 받아 전산시스템(UWIN)에 해당 사진을 등록하고 검수조서를 작성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허위 검수조서가 작성된 점, 계약업체(▷▷) 대표와 G(조교수)이 공동으로 서명한 납품지연사유서(납품완료일 : 2023. 5. 31.)를 요청하여 받았음에도 이월 등 정당한 행정절차대로 처리하지 않은 점, 납품지연사유서에 명시된 2023. 5. 31.까지도 기자재가 납품이 되지 않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감사에서 지적된 후인 2023. 6. 22.에 납품이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G(조교수)의 경우 진술한 바와 같이 ○사업단에서 납품되지 않은 기자재(5건)의 선검수를 제안하고 납품지연사유서 작성을 요청한 점은 인정되나, ○사업단의 과제책임자로서 구매요구한 기자재(5건)에 대하여 납품지연사유서에 명시된 2023. 5. 31.까지도 납품이 되지 않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감사에서 지적된 후인 2023. 6. 22.에 납품이 된 점은 사실이다.

## 5. 징계요구 양정

◇학부 G(조교수)는 6건의 기자재를 구매 요구한 과제(연구) 책임자로서 기자재가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사업단에서 추진한 기자재(5건)의 검수조서 작성에 필요한 기자재 사진을 계약업체(▷▷)에서 받아 사업단에 제공하고 개인 연구과제로 구매 요구한 기자재(1건)에 대하여 허위 검수조서를 작성한 점, 2023. 5. 31.까지도 기자재가 납품이 되지 않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G(조교수)의 이러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에 따라 준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사업단의 사업팀장 I는 사업단의 행정업무를 총괄한 자로 사업단의 검수 조서를 작성한 직원들(K, J)이 임용된 지 1년 전후의 계약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자재가 계약기간 내에 납품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기간 연장 또는 차기년도 이월 등의 정당한 절차대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검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구매관재팀에 제출하도록 결정하는 등 팀장으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한 점, 납품되지 않은 기자재의 검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2023. 5. 31.까지도 납품이 되지 않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단 사업팀장 I의 이러한 행위는 「울산대학교 일반직원 복무 규정」 제3조 제1항을 위배한 것으로 「울산공업학원 직원 징계위원회 규정」 제5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같은 규정」 제13조 “징계양정”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업단의 사무원 K와 J는 사업단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자재가 납품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업체에서 받은 기자재 사진을 UWIN 시스템에 등록하고 허위 검수조서를 작성한 점, 2023. 5. 31.까지도 납품이 되지 않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무원 K와 J의 행위는 「울산대학교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 제7조를 위배한 것으로 「같은 규정」 제50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같은 규정」 제51조 “징계양정”에 따라 문책(경징계)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6. 조치할 사항

### 울산대학교 총장은

① 기자재 검수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학부 G(조교수)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64조에 따라 '경징계', 前 ○사업단 사업팀장 I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5에 따라 '경징계' 하시고, **(징계)**

② 기자재 검수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업단의 사무원 K와 J는 「울산대학교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 제50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문책(징계)' 하시고, **(문책)**

③ 기자재 검수 업무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업단장 H, ◇학부장 L, 기자재 검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구매관재팀 차장 M, 기자재 대금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업단 사무원 N 등 4명에게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④ 계약업체로부터 미징수한 지체상금 19,700,960원을 징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회수)**

⑤ 앞으로 기자재(물품 포함)의 검수 및 대금 지급 등의 회계처리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교 육 부

## 징계·경고·주의

제 목 일반경쟁입찰 대상 수의계약 체결 부당

소 관 기 관 울산대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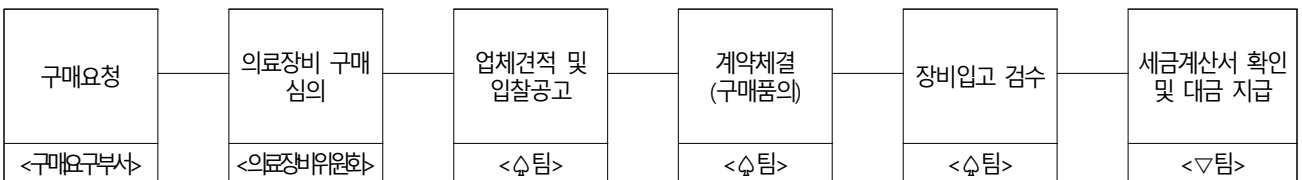
조 치 기 관 울산대학교

내 용

### 1. 업무개요

울산대병원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울산대학교병원 구매 규정」에 따라 공사·제조·구매·용역 등의 [표 1]의 절차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표 1] 계약업무 처리 절차(의료장비)



### <「울산대학교병원 구매 규정」>

#### 제5조 (구매절차)

1. 물품의 구매절차는 해당 부서에서 물품청구서(OSC상 및 수기작성)에 품명, 규격, 수량, 용도, 납기를 명기하여 구매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장비 : 투자계획에 의거 의료장비위원회에서 확정 후 병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구매한다.

2. 구매청구를 받은 구매부서는 적절한 구매방법 및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경쟁입찰, 수의계약 또는 단가, 견적계약 등의 방법에 따라 전결규정에 의거 결재를 득한 후 집행한다.

※ 전결사항

- 1억원이상 : 병원장
- 5천만원이상 1억원이하 : 행정본부장
- 5천만원미만 : ♣팀장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에 따르면 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금액(전문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그 밖의 공사 8천만원,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제조·구매·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울산대병원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울산대학교병원은 【표 2】 “일반경쟁 입찰대상 수의계약 체결 현황”과 같이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일반경쟁 대상인 ‘스 계약’ 등 57건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일반경쟁 입찰대상 수의계약 체결 현황

(단위 : 천원)

구매 부서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계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팀	2	138,618	2	172,279	1	107,175	1	119,314	-	-	6	537,386
♠팀	-	-	3	130,950	23	1,666,240	23	1,115,618	2	71,500	51	2,984,308
계	2	138,618	5	303,229	24	1,773,415	24	1,234,932	2	71,500	57	3,521,694

※ 자료 : 울산대병원 제출자료 재구성(세부내역 불임)

#### 4. 관계기관 의견

울산대학교병원에서는 '□ 계약'의 경우, 의료 장비는 환자 진료 및 치료의 효율성, 사용자의 편리성, 장비 호환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계약'의 환자 진료의 연속성, 업무의 전문성 및 희소성, 환자 정보 보호 등 해당 계약의 목적이나 성격 및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개 이상의 견적서를 비교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또한 '△ 계약'의 경우 현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는 일반경쟁입찰 시행하여 계약체결 할 예정이며, 기타 의료장비 구매도 일반경쟁입찰을 진행하여 향후 이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 5. 조치할 사항

##### 울산대학교 총장은

① 일반경쟁입찰 절차를 밟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전 ♠팀장 O, 현 ♠팀장 P, ♠팀 직원 Q 등 3명에게 「사립학교법」 제70조의5에 따라 '경징계' 조치하시기 바라며, (징계, O은 징계시효도과로 경고)

② 일반경쟁입찰 절차를 밟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울산대학교병원장 R, 전 행정본부장 S, 현 행정본부장 T, 전 ♥팀장 U, 현 ♥팀장 V, ♥팀 직원 W 등 6명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붙임】**

**일반경쟁 입찰대상 수의계약 체결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계약부서	계약일	계약기간	계약건명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1	울산대병원 ♡팀	-	-	-	87,932	-
2	“	-	-	-	50,686	-
3	“	-	-	-	127,548	-
4	“	-	-	-	44,731	-
5	“	-	-	-	107,175	-
6	“	-	-	-	119,314	-
소계(♡팀)				6건	537,386	
7	울산대병원 ♠팀	-	-	-	27,500	-
8	“	-	-	-	76,000	-
9	“	-	-	-	27,450	-
10	“	-	-	-	37,200	-
11	“	-	-	-	332,000	-
12	“	-	-	-	52,000	-
13	“	-	-	-	21,450	-
14	“	-	-	-	22,000	-
15	“	-	-	-	87,000	-
16	“	-	-	-	230,000	-
17	“	-	-	-	157,850	-
18	“	-	-	-	49,000	-
19	“	-	-	-	58,000	-
20	“	-	-	-	21,340	-
21	“	-	-	-	79,000	-
22	“	-	-	-	59,400	-
23	“	-	-	-	99,000	-

연번	계약부서	계약일	계약기간	계약건명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24	울산대병원 스포츠팀	-	-	-	45,000	-
25	“	-	-	-	23,000	-
26	“	-	-	-	28,000	-
27	“	-	-	-	32,000	-
28	“	-	-	-	61,500	-
29	“	-	-	-	27,450	-
30	“	-	-	-	70,750	-
31	“	-	-	-	31,300	-
32	“	-	-	-	42,000	-
33	“	-	-	-	45,100	-
34	“	-	-	-	56,000	-
35	“	-	-	-	185,000	-
36	“	-	-	-	27,450	-
37	“	-	-	-	31,500	-
38	“	-	-	-	29,700	-
39	“	-	-	-	70,750	-
40	“	-	-	-	54,500	-
41	“	-	-	-	31,300	-
42	“	-	-	-	28,250	-
43	“	-	-	-	54,500	-
44	“	-	-	-	80,300	-
45	“	-	-	-	48,070	-
46	“	-	-	-	29,348	-
47	“	-	-	-	98,000	-
48	“	-	-	-	32,450	-
49	“	-	-	-	32,000	-
50	“	-	-	-	31,500	-

연번	계약부서	계약일	계약기간	계약건명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51	울산대병원 순팀	-	-	-	31,300	-
52	“	-	-	-	33,000	-
53	“	-	-	-	27,300	-
54	“	-	-	-	33,000	-
55	“	-	-	-	25,300	-
56	“	-	-	-	22,000	-
57	“	-	-	-	49,500	-
소계(순팀)				51건	2,984,308	
합 계				57건	3,521,694	

# 교 육 부

## 통보

제 목 의학연구비 지급 부적정

소 관 기 관 울산대병원

조 치 기 관 울산대학교

내 용

### 1. 업무개요

울산대병원은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병원장이 직원을 임면하고 있고, 2018. 12.부터 2020. 6.까지 [표 1]과 같이 행정직 X를 이사장 승인을 받아 울산대병원 Z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표 1】 행정부원장 임용 현황

소 속	직	성 명	근무 기간
울산대학교병원	Z	X	2018. 12. 1. ~ 2020. 6. 30.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 제15조의2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회계 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며, 「울산대병원 의사직 근태 규정」 제2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이 규정은 병원에 재직 중인 의사직 교원 및 임상 교원을 대상으로 국내 연구 공가, 해외 연구 공가 등의 학회 활동과 의학연구 등의 학술활동에 필요한 의학연구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울산대병원은 【표2】 “X 의학연구비 지급현황”과 같이 2018. 12.부터 2020. 6.까지 의사직 교원 및 임상교원이 아닌 행정직으로 임용된 X에게 매월 의학연구비 합계 14,749,980원을 지급하였다.

【표 2】 X 의학연구비 지급 현황

(단위 : 원)

구 분	2018연도	2019연도	2020연도	계
의학연구비	-	-	-	14,749,980

※ 자료 : 울산대병원 제출자료 재구성(세부내역 불임)

### 4. 관계기관 의견

울산대병원은 감사결과를 인정하면서, X의 보직 임면기간인 2018. 12.부터 2020. 6.까지 지급된 의학연구비는 의사직 근태규정에 의거한 학회 활동과 의학 연구 등의 학술에 필요한 의학연구비로 지급한 목적이 아니고, ○○부원장의 임금 수준을 현 ◆◆부원장의 처우와 동일하게 산정하기 위해 지급한 내용이나, 앞으로는 내부 기준 및 지침 마련과 규정에 기반한 행정 업무 검토 및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또한 2018. 12. 1. 임용된 X에게 지급되는 의학연구비는 진료부 의사직(전문의)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며, ○○부원장은 지급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 5. 조치할 사항

#### 울산대학교총장은

병원 자체 규정을 위반하여 지급대상자가 아닌 X에게 의학연구비를 지급한 울산대병원장 R 등 4명과 의학연구비를 수령한 X 등 총 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및 회수(14,749,980원)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붙임】

X 의학연구비 지급현황

(단위 : 원)

연도별 지급 현황				비 고
월	2018년	2019년	2020년	
1	-	750,000	750,000	
2	-	750,000	916,660	
3	-	750,000	833,330	
4	-	750,000	833,330	
5	-	750,000	833,330	
6	-	750,000	833,330	
7	-	750,000	-	
8	-	750,000	-	
9	-	750,000	-	
10	-	750,000	-	
11	-	750,000	-	
12	750,000	750,000	-	
합 계	750,000	9,000,000	4,999,980	14,749,980

# 교 육 부

## 주의·회수·통보(인사자료)

제 목 학생생활관 소속 직원 대리운전 비용 지원 부적정

소 관 기 관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

조 치 기 관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

내 용

### 1. 업무개요

울산대학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재무와 회계가 건전하게 편성·집행되도록 학교장 책임 하에 관리·감독하고 있다.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 제2호, 제17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적정한 내부통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자금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자금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고,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계정과목 및 그 내용은 [별표1]의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등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 관련 [별표1]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에 따르면 지출항목의 복리 후생비는 교직원의 복리 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현물식사대(급여 시 지급하는 식대수당은 제외한다)와 의복·개인 장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라고 되어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울산대학교는 2020. 2월부터 2023. 6월 감사일 현재까지 AA 등 학생 생활관 소속직원 총 15명에게 【표】 “계정과목(복리후생비) 목적 외 집행(대리운전 비용) 현황”과 같이 총 88건의 대리운전 비용 합계 1,741,300원을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상 지출항목(복리후생비)의 목적과 달리 집행 처리하였다.

【표】 계정과목(복리후생비) 목적 외 집행(대리운전비용) 현황

(단위 : 원)

연번	직	성명	건수	지원금액	연번	직	성명	건수	금액
1	-	Y	3	66,000	9	-	AG	7	146,300
2	-	Z	6	132,000	10	-	AH	12	233,200
3	-	AA	18	366,300	11	-	AI	1	18,700
4	-	AB	9	170,500	12	-	AJ	7	151,800
5	-	AC	9	158,400	13	-	AK	2	37,400
6	-	AD	9	165,000	14	-	AL	2	31,900
7	-	AE	1	22,000	15	-	AM	1	22,000
8	-	AF	1	19,800	계			88	1,741,300

※ 자료 : 울산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세부내역 불임)

### 4. 관계기관 의견

울산대학교는 감사결과를 인정하고 재무감사 이후 지원을 즉시 중단하였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및 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건전하고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5. 조치할 사항

#### 울산대학교 총장은

①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AN과 AA 등 2명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또한, 부적정하게 지급된 대리운전 비용 합계 1,741,300원을 Y 등 총 15명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회수)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이사장 및 울산대학교 총장은

아울러, Y 등 2명은 '주의' 대상이나 감사일 현재 퇴직한 바 있어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재취업 및 포상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통보(인사자료))

【붙임】

계정과목(복리후생비) 목적 외 집행(대리운전비용) 현황

연번	사용자		사용일	집행금액 (원)	계정과목	행사명
	직급	성명				
1	-	Y		33,000	복리후생비	
				13,200	복리후생비	
				19,800	복리후생비	
			소계(3건)	66,000		
2	-	Z		16,500	복리후생비	
				22,000	복리후생비	
				22,000	복리후생비	
				22,000	복리후생비	
				22,000	복리후생비	
				27,500	복리후생비	
			소계(6건)	132,000		
3	-	AA		13,200	복리후생비	
				13,200	복리후생비	
				22,000	복리후생비	
				16,500	복리후생비	
				16,500	복리후생비	
				13,200	복리후생비	
				17,600	복리후생비	
				22,000	복리후생비	
				16,500	복리후생비	
				16,500	복리후생비	
				15,400	복리후생비	
				33,000	복리후생비	
				27,500	복리후생비	
				22,000	복리후생비	
				33,000	복리후생비	
				24,200	복리후생비	
				24,200	복리후생비	
				19,800	복리후생비	
	소계(18건)	366,300				
4	-	AB		16,500	복리후생비	
				22,000	복리후생비	
				18,700	복리후생비	
				13,200	복리후생비	
				13,200	복리후생비	
				19,800	복리후생비	
				18,700	복리후생비	
				28,600	복리후생비	
				19,800	복리후생비	
	소계(9건)	170,500				
5	-	AC		19,800	복리후생비	
				22,000	복리후생비	
				13,200	복리후생비	
				13,200	복리후생비	
				16,500	복리후생비	
				16,500	복리후생비	
				26,400	복리후생비	
				15,400	복리후생비	
				15,400	복리후생비	
	소계(9건)	158,400				

연번	사용자		사용일	집행금액 (원)	계정과목	행사명
	직급	성명				
6	-	AD		13,200	복리후생비	
				13,200	복리후생비	
				22,000	복리후생비	
				19,800	복리후생비	
				26,400	복리후생비	
				17,600	복리후생비	
				17,600	복리후생비	
				16,500	복리후생비	
				18,700	복리후생비	
		<b>소계(9건)</b>	<b>165,000</b>			
7	-	AE		22,000	복리후생비	
				<b>소계(1건)</b>	<b>22,000</b>	
8	-	AF		19,800	복리후생비	
				<b>소계(1건)</b>	<b>19,800</b>	
9	-	AG		27,500	복리후생비	
				13,200	복리후생비	
				27,500	복리후생비	
				24,200	복리후생비	
				16,500	복리후생비	
				15,400	복리후생비	
				22,000	복리후생비	
		<b>소계(7건)</b>	<b>146,300</b>			
10	-	AH		19,800	복리후생비	
				13,200	복리후생비	
				13,200	복리후생비	
				13,200	복리후생비	
				16,500	복리후생비	
				19,800	복리후생비	
				33,000	복리후생비	
				28,600	복리후생비	
				16,500	복리후생비	
				22,000	복리후생비	
				24,200	복리후생비	
				13,200	복리후생비	
		<b>소계(12건)</b>	<b>233,200</b>			
11	-	AI		18,700	복리후생비	
				<b>소계(1건)</b>	<b>18,700</b>	
12	-	AJ		16,500	복리후생비	
				16,500	복리후생비	
				22,000	복리후생비	
				33,000	복리후생비	
				27,500	복리후생비	
				22,000	복리후생비	
				14,300	복리후생비	
		<b>소계(7건)</b>	<b>151,800</b>			
13	-	AK		22,000	복리후생비	
				15,400	복리후생비	
				<b>소계(2건)</b>	<b>37,400</b>	
14	-	AL		16,500	복리후생비	
				15,400	복리후생비	
				<b>소계(2건)</b>	<b>31,900</b>	
15	-	AM		22,000	복리후생비	
				<b>소계(1건)</b>	<b>22,000</b>	
<b>합계</b>	<b>15명</b>		<b>88건</b>	<b>1,741,300</b>		

# 교 육 부

## 통보

제 목 교직원 부양가족 건강검진비 교비회계 지원 부적정

소 관 기 관 울산대학교

조 치 기 관 울산대학교

내 용

### 1. 업무개요

울산대학교는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학교에 속하는 회계를 교비회계 등으로 구분·관리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며, 울산대학교 근로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 울산대학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르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 관련 [별표 1]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에 따르면 ‘복리 후생비’란 교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현물식사대(급여 시 지급하는 식대수당은 제외한다)와 의복·개인장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울산대학교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대해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등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경비로 엄격히 제한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복리 후생비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 관련 [별표 1]에 규정된 교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집행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울산대학교는 2013. 6. 13. ▼과 “부양가족 1인에 대한 종합건강 검진을 조합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 2년마다 실시한다.” 는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건강검진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도, 해당 단체협약을 근거로 감사대상 기간인 2020.3.부터 2023. 6.까지 [표 1]과 같이 5차례에 걸쳐 교직원 부양가족 총 463명에게 합계 170,990,000원의 건강검진비를 교비회계(복리후생비, 비등록금회계)로 지원하였다.

**【표 1】 교직원 부양가족 건강검진비 지원 현황**

(단위 : 명, 원)

연번	집행일	배우자		배우자 부모		부 모		자 녀		계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1	2021.02.10.	117	40,550,000	1	350,000	17	5,550,000	10	3,300,000	145	49,750,000
2	2021.02.16.	2	700,000	-	-	1	350,000	-	-	3	1,050,000
3	2022.02.22.	-	-	-	-	1	380,000	-	-	1	380,000
4	2022.02.24.	131	49,030,000	5	1,800,000	22	8,060,000	9	3,170,000	167	62,060,000
5	2023.02.24.	121	47,950,000	6	2,250,000	16	6,050,000	4	1,500,000	147	57,750,000
<b>합 계</b>		<b>371</b>	<b>138,230,000</b>	<b>12</b>	<b>4,400,000</b>	<b>57</b>	<b>20,390,000</b>	<b>23</b>	<b>7,970,000</b>	<b>463</b>	<b>170,990,000</b>

※ 자료 : 울산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울산대학교는 교비회계에서 합계 170,990,000원 상당액을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으로 규정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 가. 관계기관 의견

울산대학교는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에 동의하면서 2009년부터 지속된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로 대학 재정 여건이 악화되었고, 그에 따라 2013년 임금협상 당시 임금 인상에 대한 대안으로 부양가족 건강검진비 지원을 신설하기로 합의한 후 단체협약에 명시하였으며, 부양가족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을 교직원의 복리후생 범위 내로 판단하여 임금협상을 한 것으로 사료되나, ▼측과 단체교섭을 통해 부양가족 건강검진비 지원이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 등에 규정한 교비회계 세출 목적 외 사용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조항 삭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설득하였으며, 해당 부양가족 건강검진에 대한 교비회계 집행을 중단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나. 검토결과

교직원 임금 인상에 대한 대안으로 관련 법령상 지원 근거가 없는 부양가족 건강검진비를 교비회계로 지원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해당 내용에 대해 노사간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 단체협약의 내용 또한 위법하여 무효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관련 법령상 단체협약의 효력이 취업규칙(보수규정 등) 보다 우선되므로 교비회계 지원에 대한 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부양가족 건강검진비를 교비회계로 지원한 기간이 단체협약 시행 후 10여년이 지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5. 조치할 사항

### 울산대학교 총장은

교직원 부양가족에 대한 건강검진비를 교비회계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첨】**

교직원 부양가족 건강검진비 지원 현황

※생략

# 교 육 부

## 징계·문책(경징계)·경고·주의·통보(인사자료)

제 목 연구재료비 집행 부당

소 관 기 관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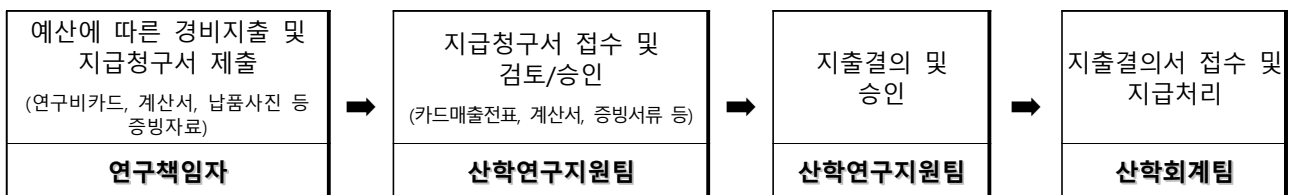
조 치 기 관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

내 용

### 1. 업무개요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집행하고, 울산대학교 연구책임자들은 연구재료 등을 구매할 경우 「울산대학교 연구비구매지침」 등에 따라 영수증, 납품사진 등 증빙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있으며, 관련 업무처리 절차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비 지출결의·승인 등 관련 업무 절차**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울산대학교 교원 복무 규정」 제3조에 따르면 교원은 교육 관계법령과 각종

규정 등을 준수하며, 교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울산대학교 초빙교원 임용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초빙교원은 「사립학교법」, 교육 관계 법령 및 본 대학교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연구교원 임용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연구교원은 연구 수행에 관한 제 규정과 본 대학 교직원 복무규정, 기타 본 대학에서 지시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울산대학교 연구직 임용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연구직은 연구 수행에 관한 제 규정과 본 대학 교직원 복무규정, 기타 대학에서 지시하는 제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 12. 31.) 제19조 제9항 관련 [별표 2의2]에 따르면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은 부당집행 금액으로 되어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1. 1. 1.~) 제4조 제1항,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연구개발 기관은 법, 영, 규칙, 이 고시,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 협약 및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에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연구시설·장비와 연구재료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연구지원팀에서는 2020. 1. 28.과 2020. 3. 10. 2차례에 걸쳐 200만원 미만 연구물품 구매(연구책임자의 직접구매) 시 납품사진 등을 포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고, 「울산대학교 연구비구매지침」(23. 4. 1.~) 제7조 제3호에 따르면 연구비로 물품 등을 직접 구매할 경우 증빙서류(영수증, 납품 사진, 견적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여 연구관리부서로 제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울산대학교 연구책임자들은 관계 법령과 각종 규정 등을 준수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연구비로 물품 등을 구매할 경우 영수증 및 납품 사진 등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울산대학교 연구책임자 56명은 2020. 2.부터 2023. 4.까지 91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표 2]와 같이 총 719건의 물품에 대한 증빙자료로 실제 납품한 물품을 직접 확인하여 촬영한 사진이 아닌 업체에서 제공한 사진파일 등을 연구물품 구매의 증빙서류로 첨부하거나, 이미 다른 연구물품 구매의 증빙서류로 첨부한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다시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표 2】 연구물품 구매 부적정 증빙서류 제출 현황**

(단위 : 원)

연번	소 속	직	성 명	국가연구 과제		교외연구 과제		계	
				건수	결제금액	건수	결제금액	건수	결제금액
1	-	교 수	AO	168	329,753,820	0	0	168	329,753,820
2	-	교 수	AP	88	169,240,500	0	0	88	169,240,500
3	-	부교수	AQ	66	121,017,700	1	1,870,000	67	122,887,700
4	-	교 수	AR	50	97,966,600	4	7,887,000	54	105,853,600
5	-	부교수	AS	38	70,471,500	1	1,500,000	39	71,971,500
6	-	부교수	AT	37	71,448,500	0	0	37	71,448,500
7	-	교 수	AU	32	62,934,160	4	7,880,400	36	70,814,560
8	-	연구조교수	AV	34	66,243,320	0	0	34	66,243,320
9	-	연구조교수	AW	32	62,516,560	0	0	32	62,516,560
10	-	박사후전문연구원	AX	19	37,276,800	0	0	19	37,276,800
11	-	교 수	AY	21	34,992,760	0	0	21	34,992,760
12	-	박사후전문연구원	AZ	17	31,117,800	0	0	17	31,117,800
13	-	교 수	BA	13	23,975,000	0	0	13	23,975,000
14	-	교 수	BB	14	22,659,920	0	0	14	22,659,920
15	-	연구조교수	BC	6	11,870,000	0	0	6	11,870,000
16	-	연구부교수	BD	4	7,953,000	0	0	4	7,953,000
17	-	교 수	BE	4	7,949,700	0	0	4	7,949,700
18	-	조교수	BF	5	7,786,900	0	0	5	7,786,900
19	-	초빙교수	BG	5	6,990,000	0	0	5	6,990,000
20	-	교 수	BH	3	5,940,000	0	0	3	5,940,000
21	-	부교수	BI	3	5,940,000	0	0	3	5,940,000
22	-	연구부교수	BJ	3	5,940,000	0	0	3	5,940,000
23	-	교 수	BK	3	5,907,000	0	0	3	5,907,000
24	-	교 수	BL	3	5,360,000	0	0	3	5,360,000

연번	소 속	직	성 명	국가연구 과제		교외연구 과제		계	
				건수	결제금액	건수	결제금액	건수	결제금액
25	-	교 수	BM	2	3,978,700	0	0	2	3,978,700
26	-	연구부교수	BN	2	3,976,500	0	0	2	3,976,500
27	-	교 수	BO	2	3,960,000	0	0	2	3,960,000
28	-	연구조교수	BP	2	3,960,000	0	0	2	3,960,000
29	-	부교수	BQ	2	3,960,000	0	0	2	3,960,000
30	-	연구부교수	BR	2	3,883,000	0	0	2	3,883,000
31	-	부교수	BS	2	3,021,500	0	0	2	3,021,500
32	-	연구교수	BT	2	2,629,000	0	0	2	2,629,000
33	-	교 수	L	2	2,000,000	0	0	2	2,000,000
34	-	교 수	BU	1	1,996,500	0	0	1	1,996,500
35	-	부교수	BV	1	1,996,500	0	0	1	1,996,500
36	-	교 수	BW	1	1,991,000	0	0	1	1,991,000
37	-	부교수	BX	1	1,991,000	0	0	1	1,991,000
38	-	교 수	BY	1	1,991,000	0	0	1	1,991,000
39	-	박사후전문연구원	BZ	1	1,991,000	0	0	1	1,991,000
40	-	연구부교수	CA	0	0	1	1,980,000	1	1,980,000
41	-	연구부교수	CB	1	1,980,000	0	0	1	1,980,000
42	-	부교수	CC	1	1,980,000	0	0	1	1,980,000
43	-	교 수	CD	1	1,980,000	0	0	1	1,980,000
44	-	교 수	CE	1	1,980,000	0	0	1	1,980,000
45	-	부교수	CF	0	0	1	1,980,000	1	1,980,000
46	-	조교수	CG	1	1,980,000	0	0	1	1,980,000
47	-	교 수	CH	1	1,980,000	0	0	1	1,980,000
48	-	교 수	CI	1	1,978,900	0	0	1	1,978,900
49	-	교 수	CJ	1	1,947,000	0	0	1	1,947,000
50	-	박사후전문연구원	CK	1	1,936,000	0	0	1	1,936,000
51	-	연구부교수	CL	1	1,936,000	0	0	1	1,936,000
52	-	연구부교수	CM	1	1,025,000	0	0	1	1,025,000
53	-	연구부교수	CN	1	990,000	0	0	1	990,000
54	-	부교수	CO	1	990,000	0	0	1	990,000
55	-	연구교수	CP	1	981,000	0	0	1	981,000
56	-	연구교수	CQ	1	981,000	0	0	1	981,000
합 계				707	1,341,222,140	12	23,097,400	719	1,364,319,540

※ 자료 : 울산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위와 같이 실제 물품 구매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당하게 제출된 구매 증빙서류를 근거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등 합계 1,364,319,540원을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4.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 결과

##### ① 관계기관 의견

울산대학교는 연구물품 구매 시 납품사진을 첨부하기로 구매지침 등에 반영한 사유는 관련 법령과 연구 지원기관 및 자체 규정(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연구책임자 및 집행부서에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국고 재원의 연구비 집행 관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도입한 추가적인 행정절차이고, 이번 감사의 지적 건은 행정절차의 제도화 정착 과정에서 연구책임자의 부정행위라기보다는 연구 특성상 지속 및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연구재료를 구매함에 따른 일부 연구자의 행정편의주의로 발생한 상황이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비 집행관리 전산시스템 개선, 물품사진 증빙자료 제출 시 구매 물품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시스템에 물품사진 등록 시 “본 납품사진은 실제 납품한 물품을 직접 확인하여 촬영한 사진임을 확인하며, 납품사진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서약 문구를 확인하는 절차와 연구비 집행담당자의 이중 확인 절차 마련, 연구재료비 관련 중앙구매 집행 활성화, 정기 및 수시감사를 통해 이번 감사 방식과 동일하게 연구재료비 집행내역 점검 및 조치, 연구재료비 집행과 관련한 각종 규정 및 지침을 안내하겠으며, 위반 사례 공유 등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② 관련자 의견

울산대학교 AO 등 연구책임자들은 해당 물품들은 실제로 구입하였고, 물품 수령 없이 업체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일부 품목의 경우 같은 양의 물품을 다른 연구자와 함께 주문했기 때문에 편의상 사진을 한 번만 찍고 첨부한 내용도 있고, 자주 사용하는 물품들의 경우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닌 업체에서 제공한 사진을 그대로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업체에서 같은 물품에 동일한 사진을 지속적으로 제공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다른 연구팀에도 같은 물품에는

동일한 사진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이번 감사 과정에서 파악하였는바, 물품 구매 증빙 자료 제출 시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 ③ 검토 결과

울산대학교에서 제출한 의견과 같이 법령과 규정 등에 따른 연구비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도입한 행정절차는 당연히 물품 검수 시 첨부되어야 할 증거 서류(납품사진 등)를 반영한 사항으로, 본 지적 내용이 “일부 연구자의 행정편의주의 때문이다.”라는 의견은 실질적인 상위 규정에 근거한 회계처리의 신뢰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근본 취지를 상당 부분 훼손된 것으로 본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특히, 연구재료비 구매 시 관련 납품 사진을 증빙자료로 첨부하는 이유는 연구책임자가 연구 물품을 실제로 구매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검수하였다는 검증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울산대학교 연구책임자(56명)들은 편의상 사진을 한 번만 찍고 첨부하였고, 실제 납품한 물품을 직접 확인·검수하여 촬영한 사진이 아닌 업체에서 편의상 제공한 사진 파일을 연구물품 구매의 증빙서류로 첨부하는 등 회계 관련 행정 절차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 5. 징계요구 양정

위 연구책임자들의 행위는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징계기준)에 따라 준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 기준”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교원이 아닌 자의 경우 연구 수행에 관한 제 규정 및 「울산대학교 교원 복무 규정」 제3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AO 등 56명이 수감기간(2020. 2. ~ 2023. 4.)이 포함된 상당 기간 동안 총 13억 원 금액에 대하여 물품 구매 시 증빙서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은

연구책임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에 해당된다. 지적된 총 13억원 719개의 물품구매 건들은 산학구매관리부 담당자의 검수 없이 연구자 자체 검수만으로 구매가 이루어진 건당 2,000천원 미만인 사항들로서, 총액 기준 10,000천원 미만인 BD 등 41명은 행위의 금액, 건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판단(경고 또는 주의)되며, 특히 구매 총액기준 10,000천원 이상과 구매 6건 이상인 경우에는 지속적·반복적으로 연구자의 책임성이 결여된 사례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 과실 이상의 비위 중대성으로 AO 등 15명에게 '경징계' 또는 문책(경징계 상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6. 조치(할) 사항

### 울산대학교 총장은

① 총액 기준 10,000천원 이상인 AO 등 15명은 물품구매 관련 업무에 대해 부작위·직무태만으로 회계질서 문란 등을 초래하였기에 「사립학교법」 제61조 및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경징계' 또는 '문책(경징계 상당)'하시기 바랍니다. (징계·문책(경징계 상당))

② 또한, 총액 기준 1,000천원 이상 10,000천원 미만인 BD(퇴직으로 불문) 등 37명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고, 총액 기준 1,000천원 미만인 CN 등 4명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경고·주의)

###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이사장 및 울산대학교 총장은

AU는 '경징계', AV 등 3명은 '문책(경징계 상당)', BD 등 10명에 대해 '경고', CP 등 2명은 '주의' 대상이나 감사일 현재 퇴직한 바 있어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재취업 및 포상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통보(인사자료))

# 교 육 부

## 기관경고·회수

제 목 연구과제 회의비 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울산대학교

조 치 기 관 울산대학교

내 용

### 1. 업무개요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를 집행하고, 울산대학교 연구책임자들은 연구과제 회의비 사용 시 「울산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 등에 따라 ‘회의비 사용 내역서’ 등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2.31., 대통령령) 제19조 제9항 관련 [별표 2의2]에 따르면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은 부당 집행 금액으로 되어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1.1.1., 고시) 제4조 제1항, 제22조 제2항 및 제25조 제5항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은 법, 영, 규칙, 이 고시,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 협약 및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연구개발비 사용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회의비를

사용할 때에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를 갖추어야 하나, 10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울산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 제120조에 따르면 회의비는 집행 후 영수증 제출 시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 회의와 관련된 사항이 상세히 기재된 '회의비 사용 내역서'를 첨부해야 하고, 회의비 중 식비는 지원기관에서 자체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한 경우와 따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1인당 3만원 이하를 적용하고, 지원기관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며, 1인당 기준금액 이상의 회의비 집행이 필요한 경우, 자체 내부품의를 통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울산대학교 연구책임자들은 회의비 사용 시 1인당 3만원 이하로 사용하고, 기준금액 이상의 회의비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내부 품의를 통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CR 등 연구책임자 25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표 1]과 같이 2019. 12.부터 2023. 4.까지 총 58차례에 걸쳐 동 시간대 2개 이상 연구과제의 연구비 카드를 나누어서 결제한 뒤, 회의 참석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각 연구 과제 회의에 별도로 참석한 것으로 '회의비 사용 내역서'를 작성하여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였다.

【표 1】 집행기준 초과 회의비 집행 현황

(단위 : 원)

연번	과제구분	연구책임자	총건수	회의수	회의록연인원	집행액(a)	중복인원 제외(b)	정당집행액(c=b×30천원)	초과집행액(d=a-c)
1	국가	CR	1	2	20	568,000	18	540,000	28,000
2		CS							
3	국가 교외	CT	7	14	86	2,277,800	63	1,890,000	387,800
4	국가	CU	2	4	25	660,000	13	390,000	270,000
5	국가	CV	3	10	85	2,374,000	70	2,100,000	274,000
6	국가	CW	2	4	20	520,000	15	450,000	70,000
7	국가 교외	CX	1	2	24	682,000	19	570,000	112,000
8	국가	CY	1	2	10	245,000	6	180,000	65,000
9	국가	CZ	3	6	24	675,500	15	450,000	225,500
10	국가	DA	1	2	20	560,000	12	360,000	200,000
11		BV							
12	국가	DB	1	2	19	554,000	15	450,000	104,000
13		DC							
14	국가 교외	DD	1	2	36	1,112,000	26	780,000	332,000
15		DE							
16	국가	BK	1	2	27	793,000	19	570,000	223,000
17	국가	DF	3	6	69	1,988,000	38	1,140,000	848,000
18	국가	DG	6	12	65	1,872,220	56	1,680,000	192,220
19	국가 교외	DH	2	4	14	403,000	9	270,000	133,000
20	국가	L	2	4	20	568,900	18	540,000	28,900
21	국가	DI	1	2	9	208,000	6	180,000	28,000
22	국가 교외	BA	10	20	133	3,679,000	90	2,700,000	979,000
23	국가	DJ	5	10	60	1,799,000	38	1,140,000	659,000
24	국가	DK	2	4	22	621,000	16	480,000	141,000
교외과제포함 소계		24명	55	114	788	22,160,420	562	16,860,000	5,300,420
25	교외	DL	3	6	35	955,000	26	780,000	175,000
교외과제 소계		1명	3	6	35	955,000	26	780,000	175,000
합 계		25명	58	120	823	23,115,420	588	17,640,000	5,475,420

※ 자료 : 울산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회의비 1인당 기준 금액보다 적게는 9,300원부터 많게는 492,000원까지 합계 5,475,420원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4. 관계기관 의견

울산대학교는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에 동의하면서 감사 지적 건의 대부분이 서로 다른 과제에서 분할 집행하여 집행담당자나 시스템상으로 확인이 불가하였고,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인한 일부 연구책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상황으로, 향후 연구 관리 전산시스템 개선, 감사 기능 강화, 관련 지침 안내·교육, 회의비 한도금액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5. 조치할 사항

##### 울산대학교 총장은

① 앞으로 연구과제 회의비 결제 시 1인당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② 또한, 1인당 집행기준을 초과하여 집행한 회의비 합계 5,475,420원을 연구책임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회수)

【별첨】

1인당 집행기준 초과 회의비 집행 현황

※ 생략

# 교 육 부

## 통보

제 목 공동기기센터 장비 사용료 미징수 등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조 치 기 관 울산대학교

내 용

### 1. 업무개요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 제6조에 따라 지원 부서로 '공동기기센터'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공동기기센터'는 재료표면, 재료시험, 화학분석 등의 분야에서 공동활용도가 높은 고가의 첨단장비를 갖추고 각종 시험분석을 하고 있으며, 산업체 연구지원 등 연구 분위기 조성 및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공동기기센터 운영 규정」을 통해 울산대학교 부설 공동기기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하고 센터보유기기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산학 연구 및 교육에 기여하고 있다.

공동기기센터의 장비 사용료 징수는 분석이 완료되면 시험 결과와 함께 기기 사용 현황과 명세서를 장비사용 신청자에게 송부하고, 사용 신청자는 절차에 따라 납부한다.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하고, 「울산대학교 공동기기센터 운영 규정」 제11조 및 「실험

장비 사용료 징수 및 운용 내규」 제4조에 따르면 센터 기기의 사용자는 분기별로 사용한 장비 사용료를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연구비가 일시적으로 없어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 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6개월 연장 기한에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미납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장비의 사용을 중지하며, 장비 사용이 중지된 후 3개월 이후까지 미납 상태가 유지된 경우 해당 사용자의 연구실 공통 운영 경비 등에서 미납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령 및 공동기기센터 운영 규정, 실험장비 사용료 징수 및 운용 내규 등에 따르면 울산대학교 공동기기센터는 6개월 이상 사용료 미납하거나 미납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장비 사용을 제한하고, 미납된 사용료를 해당 교수의 연구실 공통 운영 경비 등에서 징수하는 등 장기 미납을 최소화하고, 미납 사용료를 적극적으로 징수하도록 하여 산학협력단의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 기간 동안 울산대학교 공동기기센터의 장비 사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붙임】 “공동기기센터 사용료 기간 초과 납입 현황”과 같이 울산대학교 소속 교수 9명은 2020년부터 2022년 기간 동안 공동기기센터 장비 119건을 사용하고도 기기 사용 종료일을 기준으로 감사일 현재까지(2023. 6. 16.) 최소 7개월에서 최대 38개월까지 사용료 총액 13,413,50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울산대학교 공동기기센터는 교수 9인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및 장비 사용의 중지 등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결과

#### 가. 관계기관 의견

울산대학교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미납한 사용료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유로 행정 등 실무 인력의 부족을 제시하면서, 실무 총괄 담당자 1명(2023.

4. 30. 퇴직)이 분석 및 행정 업무를 혼자 담당하면서 사용료 청구 및 징수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미납자 대부분이 울산대 교원이고 미납금 납부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현하였기에, 연구실 공동운영경비에서 징수하거나 장비사용 중지 등의 강한 조치를 실제로 적용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나. 검토 결과

감사 이후, 공동기기센터의 실무 총괄 담당, 장비 및 사무 전담 인력 등 총 3명을 새롭게 충원하여 사용료 징수 등 행정 업무 전반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감사에 지적된 미납자 9명이 현재(2024. 1. 2.) 미납사용료 총액 13,413,500원을 개인 연구비로 납부하였고, 공동기기센터 미납사용료 기간 초과 납입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공동기기센터 미납사용료 기간 초과 납입 현황**

(단위 : 원)

소 속	직 위	사 용 자	미납금액 (갑사시)	납입금액	납입일자	납입여부	비 고
★★과	교수	DM	347,000	347,000	-	완납	
○○학부	교수	DN	913,000	913,000	-	완납	
▣▣학부	교수	DG	517,000	517,000	-	완납	
△△과	교수	DO	7,500	7,500	-	완납	
○○학부	교수	DP	194,000	194,000	-	완납	
○○학부	교수	DQ	168,000	168,000	-	완납	
★★과	교수	CH	104,000	104,000	-	완납	
●●학부	교수	DR	3,836,000	3,836,000	-	완납	
○○학부	교수	DK	7,327,000	7,327,000	-	완납	
합 계			13,413,500	13,413,500			

그러나, 미납자들의 미납한 사용료가 2024. 1. 2.자로 완납되었더라도, 울산대학교가 장기간 사용료를 미납한 교수 9명에 대한 행정적 관리 감독과 징수 노력을 해태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

## 5. 조치할 사항

### 울산대학교 총장은

자체 규정을 위반하여 공동기기센터 기기사용료 징수 업무 등을 소홀히 한 공동기기센터장 DS 등 3명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신분상 조치 등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기기 사용료 징수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붙임】

공동기기센터 사용료 기간 초과 납입 현황

(단위 : 원)

사 용 자			기기명	사 용 시작일	사 용 종료일	미납금액	미납월수 <sup>1)</sup> (2023.6.16.기준)	비 고	
소 속	직	성명						납입일자 <sup>2)</sup>	재원
★★과	교수	DM	SEM-7600	2020.03.13	2020.03.13	82,000	39	2023.10.24	연구비
			SEM-7600	2020.04.09	2020.04.09	28,000	38	2023.10.24	연구비
			SEM-7600	2020.04.23	2020.04.23	28,000	37	2023.10.24	연구비
			SEM-7600	2020.07.16	2020.07.16	28,000	35	2023.10.24	연구비
			SEM-7600	2020.10.28	2020.10.28	32,000	31	2023.10.24	연구비
			SEM-7600	2021.06.07	2021.06.07	44,000	24	2023.10.24	연구비
			SEM-7600	2021.06.29	2021.06.29	29,000	23	2023.10.24	연구비
			SEM-7600	2022.07.15	2022.07.15	76,000	11	2023.10.24	연구비
소 계						<b>347,000</b>			
○○학부	교수	DN	SEM-7600	2020.10.20	2020.10.20	99,000	31	2023.11.23	연구비
			SEM-6500	2020.10.20	2020.10.26	96,000	31	2024.01.02	연구비
			SEM-7600	2020.11.02	2020.11.02	210,000	31	2024.01.02	연구비
			SEM-7600	2020.12.28	2020.12.28	440,000	29	2024.01.02	연구비
			SEM-7600	2021.03.03	2021.03.03	28,000	27	2024.01.02	연구비
			SEM-7600	2021.07.08	2021.07.08	40,000	23	2024.01.02	연구비
소 계						<b>913,000</b>			
▣▣학부	교수	DG	SEM-6500	2020.07.02	2020.07.02	31,000	35	2023.10.25	연구비
			XRD	2020.07.10	2020.07.10	30,000	35	2023.10.25	연구비
			XRD	2020.07.29	2020.07.29	50,000	34	2023.10.25	연구비
			SEM-7600	2021.04.20	2021.04.20	94,000	25	2023.10.25	연구비
			SEM-7600	2021.05.24	2021.05.24	84,000	24	2023.10.25	연구비
			원소분석기	2021.06.03	2021.06.03	130,000	24	2023.10.25	연구비
			SEM-7600	2021.09.01	2021.09.01	58,000	21	2023.10.25	연구비
			SEM-7600	2021.09.02	2021.09.02	40,000	21	2023.10.25	연구비
소 계						<b>517,000</b>			
△△과	교수	DO	NMR	2022.04.26	2022.04.26	7,500	13	2023.09.18	연구비
소 계						<b>7,500</b>			
○○학부	교수	DP	SEM-7600	2021.06.22	2021.06.22	56,000	23	2023.10.17	연구비
			SEM-7600	2021.07.16	2021.07.16	53,000	23	2023.10.17	연구비
			SEM-7600	2021.08.02	2021.08.02	85,000	22	2023.10.17	연구비
소 계						<b>194,000</b>			
○○학부	교수	DQ	SEM-7600	2022.04.06	2022.04.06	28,000	14	2023.09.18	연구비
			SEM-7600	2022.10.21	2022.10.21	140,000	7	2023.09.18	연구비
소 계						<b>168,000</b>			
★★과	교수	CH	XRD	2021.05.11	2021.05.11	60,000	25	2023.11.07	연구비
			SEM-7600	2021.11.02	2021.11.02	44,000	19	2023.11.07	연구비
소 계						<b>104,000</b>			
●●학부	교수	DR	SEM-7600	2020.12.21	2020.12.21	106,000	29	2023.10.05	연구비
			FE-TEM	2021.01.05	2021.01.05	110,000	29	2023.10.05	연구비
			XRD	2021.04.02	2021.04.02	10,000	26	2023.10.05	연구비
			FE-TEM	2021.04.09	2021.04.09	110,000	26	2023.10.05	연구비

사 용 자			기기명	사 용 시작일	사 용 종료일	미납금액	미납일수 <sup>1)</sup> (2023.6.16.기준)	비 고	
소 속	직	성명						납입일자 <sup>2)</sup>	재원
○○학부	교수	DR	XRD	2021.05.10	2021.05.10	10,000	25	2023.10.05	연구비
			SEM-7600	2021.05.13	2021.05.13	44,000	25	2023.10.05	연구비
			SEM-7600	2021.05.20	2021.05.20	82,000	24	2023.10.05	연구비
			SEM-7600	2021.06.21	2021.06.21	20,000	23	2023.10.05	연구비
			SEM-7600	2021.08.04	2021.08.04	34,000	22	2023.10.05	연구비
			SEM-7600	2021.09.15	2021.09.16	97,000	21	2023.10.05	연구비
			SEM-7600	2021.10.05	2021.10.06	32,000	20	2023.10.05	연구비
			SEM-7600	2021.12.23	2021.12.23	151,000	17	2023.10.05	연구비
			SEM-7600	2022.02.07	2022.02.07	72,000	16	2023.10.05	연구비
			XRD	2022.04.05	2022.04.05	100,000	14	2023.10.12.	연구비
			SEM-7600	2022.04.13	2022.04.13	131,000	14	2023.10.12	연구비
			SEM-7600	2022.04.21	2022.04.21	28,000	13	2023.10.12	연구비
			XRD	2022.04.27	2022.04.29	250,000	13	2023.10.12	연구비
			XRD	2022.05.06	2022.05.06	60,000	13	2023.10.12	연구비
			SEM-7600	2022.05.09	2022.05.09	231,000	13	2023.10.12	연구비
			SEM-7600	2022.05.12	2022.05.12	284,000	13	2023.10.12	연구비
			XRD	2022.05.13	2022.05.13	100,000	13	2023.10.12	연구비
			XRD	2022.05.20	2022.05.20	60,000	12	2023.10.12	연구비
			SEM-7600	2022.05.27	2022.05.27	98,000	12	2023.10.12	연구비
			XRD	2022.05.27	2022.05.27	50,000	12	2023.10.12	연구비
			SEM-7600	2022.05.30	2022.05.30	69,000	12	2023.10.12	연구비
			XRD	2022.06.03	2022.06.03	100,000	12	2023.10.26	연구비
			XRD	2022.06.21	2022.06.21	90,000	11	2023.10.26	연구비
			SEM-7600	2022.07.06	2022.07.06	78,000	11	2023.10.26	연구비
			XRD	2022.07.06	2022.07.06	50,000	11	2023.10.26	연구비
			XRD	2022.07.07	2022.07.07	70,000	11	2023.10.26	연구비
			XRD	2022.07.20	2022.07.20	40,000	10	2023.10.26	연구비
			SEM-7600	2022.07.20	2022.07.20	176,000	10	2023.10.26	연구비
			XRD	2022.07.21	2022.07.21	100,000	10	2023.10.26	연구비
			XRD	2022.07.22	2022.07.22	100,000	10	2023.10.26	연구비
			SEM-7600	2022.09.01	2022.09.02	182,000	9	2023.10.26	연구비
			XRD	2022.09.26	2022.09.26	100,000	8	2023.10.26	연구비
			XRD	2022.10.12	2022.10.12	30,000	8	2023.10.26	연구비
SEM-7600	2022.10.26	2022.10.26	91,000	7	2023.10.26	연구비			
XRD	2022.10.27	2022.10.27	50,000	7	2023.10.26	연구비			
XRD	2022.10.28	2022.10.28	40,000	7	2023.10.26	연구비			
XRD	2022.11.09	2022.11.09	200,000	7	2023.10.26	연구비			
소 계						<b>3,836,000</b>			
○○학부	교수	DK	SEM-7600	2020.12.16	2020.12.16	489,000	30	2023.10.20	연구비
			SEM-7600	2020.12.30	2020.12.30	176,000	29	2023.10.20	연구비
			SEM-6500	2021.01.13	2021.01.13	245,000	29	2023.10.20	연구비
			SEM-6500	2021.01.19	2021.01.19	47,000	28	2023.10.20	연구비
			SEM-7600	2021.01.20	2021.01.20	378,000	28	2023.10.20	연구비
			SEM-7600	2021.03.16	2021.03.16	32,000	27	2023.10.20	연구비
			EBSD	2021.03.16	2021.03.16	300,000	27	2023.10.20	연구비
			SEM-7600	2021.04.28	2021.04.28	187,000	25	2023.10.20	연구비

사 용 자			기기명	사 용 시작일	사 용 종료일	미납금액	미납월수 <sup>1)</sup> (2023.6.16.기준)	비 고	
소 속	직	성명						납입일자 <sup>2)</sup>	재원
○○학부	교수	DK	SEM-7600	2021.05.14	2021.05.14	80,000	25	2023.10.20	연구비
			SEM-7600	2021.05.17	2021.05.17	112,000	24	2023.10.20	연구비
			SEM-7600	2021.05.27	2021.05.27	80,000	24	2023.10.20	연구비
			SEM-7600	2021.06.07	2021.06.07	40,000	24	2023.10.20	연구비
			SEM-7600	2021.06.09	2021.06.09	175,000	24	2023.10.20	연구비
			SEM-7600	2021.07.08	2021.07.08	264,000	23	2023.10.20	연구비
			SEM-7600	2021.07.29	2021.07.29	148,000	22	2023.10.20	연구비
			SEM-7600	2021.07.29	2021.07.29	190,000	22	2023.10.20	연구비
			SEM-7600	2021.07.29	2021.07.29	43,000	22	2023.10.20	연구비
			SEM-7600	2021.08.03	2021.08.03	175,000	22	2023.10.20	연구비
			SEM-7600	2021.08.10	2021.08.10	275,000	22	2023.10.20	연구비
			SEM-7600	2021.08.12	2021.08.12	96,000	22	2023.10.20	연구비
			SEM-7600	2021.09.02	2021.09.02	194,000	21	2023.10.20	연구비
			SEM-7600	2021.09.03	2021.09.03	280,000	21	2023.10.20	연구비
			SEM-7600	2021.09.24	2021.09.24	91,000	20	2023.10.20	연구비
			SEM-7600	2021.09.28	2021.09.28	93,000	20	2023.10.20	연구비
			SEM-7600	2021.09.29	2021.09.29	136,000	20	2023.10.20	연구비
			SEM-7600	2021.10.26	2021.10.27	73,000	19	2023.10.20	연구비
			SEM-7600	2021.11.11	2021.11.11	132,000	19	2023.10.20	연구비
			SEM-7600	2021.11.23	2021.11.23	130,000	18	2023.10.20	연구비
			SEM-7600	2021.12.01	2021.12.01	32,000	18	2023.10.20	연구비
			SEM-7600	2021.12.15	2021.12.21	62,000	17	2023.10.20	연구비
			SEM-7600	2022.01.19	2022.01.19	414,000	16	2023.10.20	연구비
			SEM-7600	2022.01.20	2022.01.20	85,000	16	2023.10.20	연구비
			SEM-7600	2022.04.19	2022.04.19	123,000	13	2023.10.20	연구비
			SEM-7600	2022.04.19	2022.04.19	126,000	13	2023.10.20	연구비
			SEM-7600	2022.05.03	2022.05.03	204,000	13	2023.10.20	연구비
			SEM-7600	2022.05.26	2022.05.26	233,000	12	2023.10.20	연구비
			SEM-7600	2022.06.14	2022.06.14	28,000	12	2023.10.20	연구비
			SEM-7600	2022.06.16	2022.06.16	138,000	12	2023.10.20	연구비
			SEM-7600	2022.07.01	2022.07.01	37,000	11	2023.10.20	연구비
			SEM-7600	2022.09.07	2022.09.07	112,000	9	2023.10.20	연구비
			SEM-7600	2022.09.22	2022.09.22	162,000	8	2023.10.20	연구비
SEM-7600	2022.09.26	2022.09.26	177,000	8	2023.10.20	연구비			
SEM-7600	2022.10.12	2022.10.12	82,000	8	2023.10.20	연구비			
SEM-7600	2022.10.12	2022.10.12	82,000	8	2023.10.20	연구비			
SEM-7601	2022.10.13	2022.10.13	228,000	8	2023.10.20	연구비			
SEM-7600	2022.10.20	2022.10.20	93,000	7	2023.10.20	연구비			
SEM-7600	2022.11.03	2022.11.03	138,000	7	2023.10.20	연구비			
FE-TEM	2022.11.09	2022.11.10	110,000	7	2023.10.20	연구비			
소 계						7,327,000			
합 계						13,413,500			

주1: 징수 청구 일자를 특정할 수 없어, 미납 월수는 기기 사용 종료일 기점으로 감사일까지로 정함

주2: 분할납부의 경우 납입 완료일 기준

# 교 육 부

## 통보

제 목 지식재산권 미신고 부적정

소 관 기 관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조 치 기 관 울산대학교

내 용

### 1. 업무개요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교직원 등의 연구개발 활동과 발명을 장려·보호하고 대학 및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직무발명 신고, 발명 인터뷰, 직무발명 관리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발명진흥법」 제2조, 제10조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르면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하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울산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및 기술사업화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직무발명이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 대학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 등의 재직 중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교직원 등이 본 대학의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창작한 발명이거나 본 대학과 산학협력단 및 정부 부처 또는 정부 출연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특정 연구 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을 말하고, 그 밖의 제3자와의 연구계약에 따라 그 권리가 본 대학에 귀속하도록 된 발명도 직무발명으로 보며, 제3자와의 연구용역 과제라도 대학 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8조, 제9조에 따르면 직무발명에 따른 권리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하고, 발명신고된 시점에 그 발명의 권리는 자동으로 승계된 것으로 하나, 산학협력단이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발명자는 직무발명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지식재산권관리시스템(UWIN)을 통하여 신고하고 발명신고서와 양도증을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발명자가 신고의무를 해태하거나 고의로 개인 또는 타인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그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발명자를 대학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법령과 규정에 의하면 울산대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발명을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지식재산권관리시스템(UWIN)을 통하여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울산대학교 교수 5명은 【표】 “직무발명 지식재산권 개인 명의 출원·등록 현황”과 같이 총 8건의 직무발명을 하고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인 및 공동명의로 출원·등록하였다.

[표] 직무발명 지식재산권 개인명의 출원·등록 현황

연번	소속	직급	성명	권리	출원일	등록일	출원번호	등록번호	발명의명칭	비고 (공동특허)	
1	○○○과	교수	DW	특허	-	-	-	-	-	-	
2	○○○과	교수	DX	특허	-	-	-	-	-	-	
3	○○○과	교수	DY	특허	-	-	-	-	-	-	
4				특허	-	-	-	-	-	-	-
5				특허	-	-	-	-	-	-	-
6				디자인	-	-	-	-	-	-	-
7	○○○과	교수	DZ	디자인	-	-	-	-	-	-	
8	○○○과	교수	EA	특허	-	-	-	-	-	-	

####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결과

##### 가. 관계기관 의견

울산대학교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해당 교원들이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로 특허 출원 과정에서 기업 담당자 착오로 산학협력단에 신고하는 것을 누락하여 발명 신고해야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함, 기업에서 임의로 출원인에 포함하여 인지하지 못함 등을 제시하였다.

##### 나. 검토결과

「발명진흥법」 및 울산대학교 자체 규정 등에 따르면 직무발명 신고의 주체는 종업원 등(교직원 등)으로 되어 있고, 신고의 내용 및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기업에서 신고를 누락하였으며, 신고 내용 및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 등은 인정하기 어렵고, 특허청은 특허권 존속기간까지 매년 권리권자 모두에게 등록료 납부를 고지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기업에서 임의로 출원인에 포함하여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 또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5. 조치할 사항

### 울산대학교 총장은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은 DY 등 5명에 대해 「울산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및 기술사업화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신분상 조치 등 적의 조치 하시고, 개인명의로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산학 협력단 명의로의 권리 승계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교 육 부

## 경고·회수

제 목 시설공사 법정경비 미정산 부적정

소 관 기 관 울산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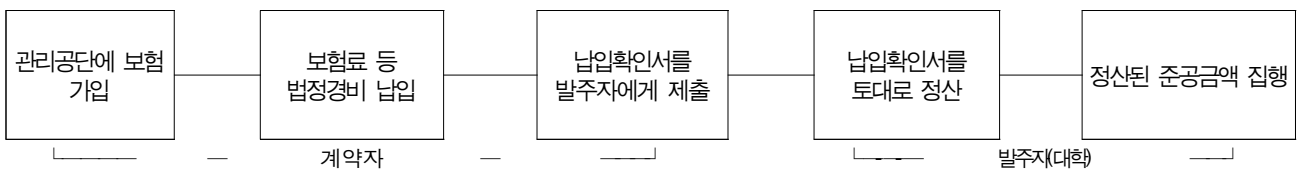
조 치 기 관 울산대학교

내 용

### 1. 업무개요

울산대학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시설공사 법정경비 정산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표】 법정경비 정산 절차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및 제87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과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제도의 가입에 드는 금액을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및 제83조 제6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자의 공제부금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사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울산대학교는 시설공사를 준공하면서 도급자가 사용한 국민건강 보험료 등 법정경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적정하게 검토하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정산·감액 처리하여 관련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울산대학교는 2021. 1월부터 2023. 6월 감사일 현재까지 【붙임】 “법정 경비(국민건강보험료 등) 미정산 현황”과 같이 2021. 1. 5. (주)☆☆(대표 EB)과 계약한 ‘ㄱ 공사’ 등 총 6건(계약금액 합계 1,642,170천원)에 대해 준공일에 제출된 준공 서류를 검토하면서 미사용한 국민건강 보험료 등 법정경비 합계 33,293천원(국민건강·연금보험료 24,984천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079천원, 퇴직공제부금비 6,227천원)을 감액·정산하지 않고 도급자가 제출한 준공서류만을 근거로 준공금액을 1,642,170천원으로 확정하여 지급하지 않아야 할 미사용 법정경비 33,293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 4. 관계기관 의견

울산대학교는 감사결과를 인정하면서 도급자가 제출한 법정경비 증빙 서류를 업무담당자가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점으로 향후 관련 업무 추진에 주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5. 조치할 사항

##### 울산대학교 총장은

① 'ㄱ 공사' 등 총 6건의 미사용 법정경비를 감액·정산하지 않고 준공 금액을 지급한 총무처 EC, ED 2명을 '경고' 조치하기 바랍니다. (경고)

② 또한, 정산(감액) 하지 않은 총 6건에 대한 법정경비 합계 33,293천원을 (주)☆☆(대표 EB) 등 계약업체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랍니다. (회수)

【붙임】

법정경비(국민건강보험료 등) 미정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공사명 (착공일~준공일) (계약일)	계약 금액	구 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국민건강/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미정산액* (환수액)	공사업체 (대표자명)	비고 (담당자)
1	ㄱ	260,000	지급금액	6,870	1,082	0	0	1,082	(주)☆☆ (EB)	EC
			증빙금액	6,870	0	0	0			
			미 증 빙 금 액	0	1,082	0	0			
2	ㄷ	239,000	지급금액	2,436	4,844	558	1,405	6,807	(주)●● (EE)	EC
			증빙금액	2,436	0	0	0			
			미 증 빙 금 액	0	4,844	558	1,405			
3	ㅍ	298,400	지급금액	7,975	9,507	1,095	2,757	13,360	(주)■■■ (EF)	EC
			증빙금액	7,975	0	0	0			
			미 증 빙 금 액	0	9,507	1,095	2,757			
4	ㅎ	233,770	지급금액	6,564	1,586	0	0	1,586	(주)▲▲ (EG, EH)	EC
			증빙금액	6,564	0	0	0			
			미 증 빙 금 액	0	1,586	0	0			
5	ㄱ	258,000	지급금액	6,319	7,965	426	0	8,392	(주)●● (EE)	ED
			증빙금액	6,319	0	0	0			
			미 증 빙 금 액	0	7,965	426	0			
6	ㄴ	353,000	지급금액	8,710	0	0	2,065	2,066	(주)●● (EE)	ED
			증빙금액	8,710	0	0	0			
			미 증 빙 금 액	0	0	0	2,065			
계		1,642,170	지급금액	38,874	24,984	2,079	6,227	33,293	-	-
			증빙금액	38,874	0	0	0			
			미 증 빙 금 액	0	24,984	2,079	6,227			

\* 순공사비에서 일반관리비, 이윤 포함(백원단위에서 반올림)

# 교 육 부

## 경고·회수

제 목 시설공사 준공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울산대학교

조 치 기 관 울산대학교

내 용

### 1. 업무개요

울산대학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울산대학교 검수규정」 등의 규정에 따라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품질, 수량, 규격 및 기타 납품 조건 등 계약 이행 여부를 검사한 후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사 등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 그 대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계약금액 3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계약상대방의 계약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울산대학교 검수규정」 제4조, 제8조 제1호,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시설공사 검수자는 총무처 시설관리팀으로 하고, 검수자는 품질, 수량, 규격 및 기타 납품조건을 검토한 후 검수하여야 하며, 검수 관계서류와 시설공사 등의 내용이 크게 상이하여 본교에 심각한 재정상의 불이익 또는 업무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확실할 때에는 “불합격” 처리하고, 검수부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구매부서 및 요구부서에 통보하고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나, 재납품 또는 재시공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품(시공)자의 부담으로 재납품(시공)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울산대학교는 시설공사가 완료되면 설계도서대로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거나 계약에 명시된 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거나, 시공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게 하거나, 감액·정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울산대학교는 【표】 “시설공사 시공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21. 7. 20. (주)●●(대표 EE)과 계약한 ‘ㄷ 공사’ (계약금액 239,000천원, 공사기간 ‘21.7.20.~’21.8.27) 등 총 2건(계약금액 합계 592,000천원)을 준공하면서 설계 도서대로 시공하지 않은 공정 총 3건, 19,190천원에 대해 감액·정산 또는 시공보완 조치를 하지 않고 준공 처리하였다.

【표】 시설공사 시공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공사명	계약일 (공사기간)	계약금액	계약자	시공 내역				담당자 (검사자)
					설계(금액)	시공(금액)	미시공내역	금액*	
1	ㄷ	-	239,000	(주)●● EE	준공청소 5,137㎡ (9,900)	준공청소 2,181㎡ (4,380)	준공청소 2,956㎡ 미정산	5,520	EJ (EI)
2	ㄸ	-	353,000	(주)●● EE	pvc창호 48,807㎡ (267,300)	pvc창호 47,007㎡ (257,430)	pvc창호 1,800㎡ 미정산	9,870	EJ (EI)
					준공청소 5,488㎡ (7,300)	준공청소 2,493㎡ (3,500)	준공청소 2,995㎡ 미정산	3,800	
					소계			13,670	
합계			592,000		3건			19,190	

\* 순공사비에서 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 4. 관계기관 의견

울산대학교는 감사결과를 인정하면서 시설공사 준공검사를 관련 검수규정에 따라 면밀하게 시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점으로 향후 관련 업무 추진에 주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5. 조치할 사항

##### 울산대학교 총장은

① '트 공사' 등 시설공사 총 2건(공정 총 3건)에 대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감액·정산 또는 시공보완 조치하지 않고 준공금액을 지급한 총무처 EI, EJ 2명을 경고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② 또한, 정산(감액)하지 않은 총 2건(공정 총 3건)에 대한 미시공 금액 합계 19,190천원을 (주)●●(대표 EE)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회수)

## IV. 현지조치 사항

지적 건명	지적 내용	조치할 사항
<b>【법인·재산】</b>		
1. 이사회 참석수당 (거마비) 현금 지급 부적정	<p>○ 2020. 4.부터 2023. 4.까지 총 10회 법인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이사회 참석수당(500천원/인)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참석 이사들에게 지급(합계 37,500천원)</p> <p style="text-align: center;"><b>【「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3조】</b></p>	<p><b>【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b></p> <p>○ 통보</p> <p>- 관련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이사회 참석 수당을 지급하기 바람</p>
2. 교육용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p>○ 교육용기본재산(ㄱ 등 토지 74개 필지 10,918㎡, ㄴ 건물 11,721㎡)을 용도대로 활용하지 않아 재산세 합계 126,735,890원을 교비회계로 납부</p> <p style="text-align: center;"><b>【「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43조】</b></p>	<p><b>【울산대학교】</b></p> <p>○ 통보</p> <p>- 교육용 기본재산을 당초 목적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p>
<b>【교비·병원회계】</b>		
3. 병원 연구비 관련 규정 미비	<p>○ 「내부연구비 운용규정», 「학술연구기반조성사업 연구비 운용 규정」 등 병원 내부규정 상 연구결과물 제출기한을 상이하게 운영</p> <p>※ 「내부연구비 운영규정」 6개월, 「학술연구기반조성사업 연구비 운용 규정」 7일, 2년으로 혼재</p> <p style="text-align: center;"><b>【「울산대학교병원 제 규정 관리 규정」 제6조 및 제8조 제3항, 「울산대학교병원 내부연구비 운용규정」 제6조, 「학술연구기반조성사업 연구비 운용」 제17조, 제18조】</b></p>	<p><b>【울산대학교】</b></p> <p>○ 통보</p> <p>- 관련 제 규정을 정비하여 연구결과물 제출 기한이 상충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p>
4. 병원 내부감사 미실시 부적정	<p>○ 감사계획에 의거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미상일로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정기감사 미실시</p> <p style="text-align: center;"><b>【「울산대학교병원 내부감사 규정」 제2조, 제4조, 제10조】</b></p>	<p><b>【울산대학교】</b></p> <p>○ 통보</p> <p>-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감사를 실시하기 바람</p>

지적 건명	지적 내용	조치할 사항
5. 지체상금 미부과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 납품기한이 61일이 지났음에도 지체상금 16,098,510원 미부과(1건)</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의 2】</b></p>	<p style="text-align: center;"><b>【울산대학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회수)</li> <li>- 미징수한 지체상금 16,098,510원을 징수하여 병원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li> </ul>
<b>【산단·연구비】</b>		
6. 연구비 내부 정기 감사 미실시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 회계년도 종료후 6개월 이내 전년도 연구비 관리 업무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2012 이후 2023. 6. 감사일 현재까지 정기감사 미실시</li> <li>※ 2022.5.~6. 전년도 연구과제 4건(수감 희망 과제)에 대해서만 자체 감사 실시</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울산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 제15조, 「울산대학교 연구비 관리에 대한 내부감사 지침」 제4조】</b></p>	<p style="text-align: center;"><b>【울산대학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보</li> <li>-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정기 감사를 실시하기 바람</li> </ul>
7. 교내 연구과제 결과물 미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과제를 진행하면서 연구종료 후 제출기한 내 연구결과 보고서 등 결과물 미제출</li> <li>※ 교내 연구비(22건), 의대 연구비(2건)/ 총 24건</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울산대학교 교내연구비관리지침」 제14조, 「울산대학교 학생연구과제 관리지침」 제13조】</b></p>	<p style="text-align: center;"><b>【울산대학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보</li> <li>- 연구과제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과제 책임자로부터 연구 결과물을 제출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기 바람</li> </ul>
8. 연구노트 관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 3.부터 2023. 6. 감사일 현재까지 연구 책임자 308명이 연구과제가 종료되었음에도 연구노트 및 관련 자료를 미제출</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9조 및 제10조, 「울산대학교 전자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규정」 제9조】</b></p>	<p style="text-align: center;"><b>【울산대학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보</li> <li>- 미제출된 연구노트 및 관련 자료를 산학 협력단에서 제출받아 보관 관리하기 바람</li> </ul>

지적 건명	지적 내용	조치할 사항
9. 전자조달시스템 미이용 부적정	<p>○ L에서 시설환경공사 입찰 참가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문하게 하여 관련서류를 제출받음(1건)</p> <p><b>【「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b></p>	<p><b>【울산대학교】</b></p> <p>○ 통보</p> <p>-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참가서류 제출받기 바람</p>
<b>【시설·물품】</b>		
10. 관할청 미협의 가설건축물 설치 부적정	<p>○ 영선용 자재창고 등 가설건축물 총 7개동(연면적 합계 135㎡)을 관할청과 협의 없이 설치하여 사용</p> <p><b>【「건축법」제14조 제1항 제5호, 제20조 제1항 및 제3항】</b></p>	<p><b>【울산대학교】</b></p> <p>○ 통보</p> <p>-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청과 협의 등을 실시하기 바람</p>